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3년 05월 30일

농소1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박 *열	박 *열 1962-07-17	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 (매곡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5-19
김 *우	김 *우 1998-03-09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2길 (호계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5-19

